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24

발의연월일: 2021. 3. 4.

발 의 자:정운천·서일준·배준영

홍문표 • 이종성 • 권명호

김태호·하태경·박 진

최춘식 • 박대수 • 하영제

김형동 · 서영석 · 김성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허가·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였을 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가·등록 등이 없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물장묘업체와 관련하여 무등록 영업이 횡행하고 불법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동물장묘업자 등 영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사망 등으로 인한 변경신고의무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하였음에도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음.

이에 허가·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영업 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의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4호의2,제34조제4항제6호,제36조제4항·제5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34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인도적인방법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1호

의2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을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로 한다.

1의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제4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조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 ③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u>니하고 영업을 하여 두 차례</u>
	이상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
	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u>정된 경우</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영업의 허가) ① ~ ③	제34조(영업의 허가)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여 두 차례 이상 제46조제3 항제2호에 따른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 리를 포함한다)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 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3. ~ 6. (생략)
- ② (생 략)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 1. ~ 5. (생 략) <u><신</u> 설>

② ~ ④ (생 략)

<u>오 또는 세1오의2에</u>
<u>.</u>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
<u> </u>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47조(과태료) ①
141 1 1(1) (1)
1. ~ 5. (현행과 같음)
6.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살
<u>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조치</u>
<u>한 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